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동향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rends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National Basic Plans for School Libraries

최 희 주 (Heeju Choi)*

송 기 호 (Giho Song)**

박 지 현 (Jihyeon Park)***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간 연계 및 |
| II.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개정 | 법정 사항 반영 양상 분석 |
| III.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내용 분석 | V. 결론 및 제언 |

요 약: 이 연구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과 제1~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정책 영역별 내용 변화와 추진 과제 간 연계 양상,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2항의 법정 사항 반영 양상을 분석하여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섯 개 계획의 46개 과제를 시설·장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전담인력·전문성, 지원체제의 네 영역으로 분류하고, 계승, 확대 및 구체화, 중단, 통합, 신설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1~4차 42개 과제를 법정 사항에 따라 분류하고 2인이 독립 코딩한 뒤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은 시설·장서 중심의 기반 조성에서 교육과정 연계, 공간 혁신, 정보·미디어 문해교육,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과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로 발전하였다. 전담인력 확보,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강화, 자료구입비 기준과 성과 관리는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적 점검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42개 과제 중 29개(69%)가 제5호 포괄 조항에 분류되어 교수·학습과 독서교육, 지원체계가 법정 항목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법정 포함사항 정비, 계획 간 수립 절차의 연계, 평가·환류와 실행 책무 강화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정책 연계성, 학교도서관진흥법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domain-specific policy changes and linkages among implementation tasks in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and the First through Fourth Basic Plans for School Library Promotion. It also examines how the statutory matters required under Article 7(2) of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are reflected in these plan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The 46 tasks across the five plans were classified into four domains: facilities and collections, library use programs, dedicated personnel and professional expertise, and support systems. They were analyzed using five categories: continuation, expansion and specification, discontinuation, integration, and introduction of new tasks. The 42 tasks in the First through Fourth Plans were also classified by statutory matter. Two researchers independently coded them and resolved disagreements through discussio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olicy evolved from infrastructure development centered on facilities and collections toward curriculum integration, learning-space innovation, information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personalized reading education, and data-driven policy management. The repeated inclusion of tasks concerning dedicated personnel, school library support centers, materials acquisition budget standards, and performance management demonstrates policy continuity and the need for sustained monitoring. Of the 42 tasks, 29(69%) were classified under the catch-all provision of Item 5, indicating that teaching and learning, reading education, and support systems are not clearly articulated in the statutory categories. Accordingly, this study recommends revising the statutorily required components, strengthening procedural coordination across plans, and enhancing evaluation, feedback, and implementation accountability.

KEYWORDS: School Libraries, School Library Basic Plans, Policy Linkag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 논산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memohee@naver.com / ISNI 0000 0005 2877 710X) (제1저자)

** 국립공주대학교 교수(giho7@kongju.ac.kr / ISNI 0000 0004 6411 4832) (교신저자)

*** 대전대양초등학교 사서교사(092696@naver.com / ISNI 0000 0005 3080 4066) (공동저자)

• 논문접수: 2026년 8월 20일 • 최초심사: 2026년 9월 4일 • 게재확정: 2026년 9월 18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3), 161-183,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3.202609.161>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문제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 시설이다. 국내·외 학교도서관 기준과 선언문은 학교도서관을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며 정보의 평가 및 활용 능력을 기르는 공간으로 설명한다. 최근에는 삶과 진로, 형평성, 자유, 웰빙, 창의성, 정보·디지털 문해력까지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1990년대 후반 학교도서관 운동과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배경으로 국가 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하고 2003년부터 추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학교도서관 시설과 장서, 활용 프로그램, 운영 인력, 민관협력체계를 국가 수준으로 격상시킨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이어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2008년부터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학교도서관 정책은 법에 기초한 중장기 계획체제로 전환되었다.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계획은 독립적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 선행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를 계승하는 동시에 사회·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거나 기존 정책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획별 추진 과제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정책 영역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 기본계획은 학교도서관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학교 교육 안에서 그 역할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 그리고 한정된 인력·시설·자료·재원을 어느 영역에 우선 배분할지 등을 제시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의 정책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변화는 국가가 학교도서관의 의미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구성해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2008~2012)에서 제4차 계획(2024~2028)까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기간에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크게 변화하였다. 초기에는 학교도서관 미설치교 해소와 장서 확충이 시급한 과제였지만, 이후 교육과정 연계 수업, 정보활용교육, 공간 혁신, 디지털 정보서비스, 미디어 문해교육, 맞춤형 독서교육,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가 주요 과제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약 25년에 걸친 계획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기반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효과, 인력 정책, 법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학교도서관 정책의 연계 등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부터 제4차 기본계획까지 세부 추진 과제 간 연계 양상과 법정 사항 반영 양상을 함께 분석한 통시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4차 계획이 시행 중인 현시점에서 그 정책

적 위치와 구조를 점검하는 작업은 제4차 계획의 실행·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5차 기본계획(2029~2033)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과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의 내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다섯 개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는 어떠한 연계 양상을 보이는가?

셋째,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2항의 법정 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과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정책 영역별 내용 변화와 세부 추진 과제 간 연계 양상을 분석하고,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계획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2항의 법정 사항 반영 양상을 분석하여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2003~2007)』, 『제1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08~2012)』, 『제2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4~2018)』,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24~2028)』 등 5건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2003~2007)』은 법정 기본계획은 아니지만 후속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추진체계에 직접적인 토대를 제공하였으므로 정책 동향과 연계성 분석에 포함하였다. 법정 사항 반영 양상 분석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이후 수립된 제1차부터 제4차 기본계획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각 기본계획이 마련된 사회적 교육적 특징과 배경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계획 간 연계성의 분석 단위는 활성화 종합방안 4개, 제1차 8개, 제2차 11개, 제3차 11개, 제4차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송기호 외, 2023)를 참고하여 과제를 다음 〈표 1〉과 같이 ①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②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③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④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의 네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계획 간 연계 유형은 동일한 정책 목적과 수단이 유지된 경우 ‘계승’(예: 시설, 공간, 대상·범위·수단이 확대되거나 세분된 경우 ‘확대 및 구체화’(예: 정보활용교육), 후속 계획에서 실질적 대응 과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중단’(예: 학교도서관 진흥 재원 확대 및 다양화), 둘 이상의 과제가 하나로 재구성된 경우 ‘통합’(예: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이전 계획에 없던 정책 목적이나 수단이 도입된 경우 ‘신설’(예: 메이커 교육)로 구분

하였다. 이때, ‘중단’은 실제 사업의 종료가 아닌 후속 계획에 대응 과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공통 정책 내용에 해당하는 반복 세부 실행 내용은 다섯 개 계획 중 과반수인 세 개 이상의 계획에 명시된 경우(예: 협력수업)로 한정하였다.

〈표 1〉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분석 범주와 주요 내용

분석 범주	주요 내용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시설, 공간, 장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교수·학습 지원,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전담인력 확보, 전문성 개발(연수)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정책 추진체계, 지원센터, 협력망, 정보시스템(DLS, 독서로DLS), 정책 홍보 및 인식 제고

법정 사항 반영 분석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 제7조 제2항을 기준으로 제1차부터 제4차까지 42개 세부 추진 과제를 분류하였다. 제1호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은 기본계획 전체의 성격과 방향을 포괄하므로 세부 추진 과제 분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제2호부터 제5호는 세부 추진 과제명과 세부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의 항목에 배정하여 중복으로 집계되지 않도록 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2인의 연구자가 분석 단위, 범주와 판정 기준을 공유한 뒤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코딩 결과,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연계 양상 분석에서는 불일치 항목은 7건이었고, 관련 법정 사항 반영 양상 분석에서 불일치 항목은 1건이었다. 불일치 항목은 계획 원문의 세부 실행 내용과 사전에 설정한 판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합의하였다.

II.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개관

1.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수립 체계

국내 국가 수준의 법정 학교도서관 계획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거한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 유일하다.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은 중앙정부 또는 국가 단위의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학교도서관 정책의 비전과 목표, 과제, 실행 주체, 재정·조직·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 문서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진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교육부장관의 기본계획과 시·도교육감의 시행계획, 학교도서관 관련 위원회, 인력·시설·자료 및 협력체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제7조 제2항은 기본계획에 ①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②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③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④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확보·양성·교육, ⑤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지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43호) 제2조 제1항은 기본계획 시작 연도의 전년도 11월 말까지 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최초 기본계획은 법 시행 직후인 2008년 8월 수립되었다. 제1차 계획은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시하였으나 제2차 계획 등 후속 문서에는 제1차 계획 기간을 '2008~2013'으로 표기하여 자료 간 불일치가 나타난다. 법 제7조 제2항의 5년 주기에 따르면 제2차 계획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계획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설정되었다. 이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2.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전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발전 방향을 최초로 체계화한 정책이다. 당시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수행평가, 탐구학습,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핵심 시설로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노영희, 홍강표, 2007; 변우열, 2004). 그러나 당시 학교도서관 현장 운영 여건은 이러한 정책적 요구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모든 학생이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 과제의 운영 실태와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평가 결과는 이후 제1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비롯한 후속 국가 수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곽철완, 장윤금, 2006; 노영희, 2007; 노영희, 권재현, 2007; 노영희, 홍강표, 2007; 변우열, 2004; 이재원, 조현양, 2006).

『제1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은 2007년 12월 14일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라 2008년 8월 최초로 수립된 법정 기본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의 정책 방향

을 제시하였다. 제1차 계획은 ‘교수·학습 지원의 중심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운영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서비스 확대 강화, 도서관 기본역량 강화, 학교도서관 진흥 체제 강화, 학교도서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이 4개의 대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은 2014년 3월 수립된 두 번째 법정 기본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계획은 ‘따뜻한 교육, 행복의 공간 학교도서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도서관,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성이 발현되는 교육과정 지원, 꿈과 끼를 찾아주는 인성교육 지원, 소통과 나눔 공간으로의 확대,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학교도서관 지원 체제 확대와 같이 5개의 대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1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은 2019년 3월 수립된 세 번째 법정 기본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 등 사회·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공간 학교도서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공동체 학습경험의 축적 및 공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질적 변화를 통한 교육과정 지원, 학습 지원 및 공유를 위한 학교도서관 범위 혁신, 양질의 독서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체제 개선과 같이 4개의 대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1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은 2024년 3월 수립되어 현재 시행 중인 네 번째 법정 기본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고교학점제 시행 등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사회에서 학생의 문해력과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책을 시설·운영 중심에서 교수·학습 활동 지원과 교육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활기찬 학교도서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독서교육, 질적 도약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와 같이 3개의 대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2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제1차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	제2차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	제4차 학교도서관 진흥기본계획
기간	2003-2007	2008-2012	2014-2018	2019-2023	2024-2028
비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교수-학습 지원의 중심으로서의 학교도서관	따뜻한 교육, 행복의 공간 학교도서관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포용의 공간 학교도서관	활기찬 학교도서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목표	모든 학생이 자기 주도적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학교도서관 운영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	- 학교 교육 정상화를 지원하는 학교도서관 -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도서관 - 문화·예술 체험 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공동체 학습경험 축적 및 공유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 및 미래 인재 양성
세부 추진 과제	-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제고 -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이용자 확대 및 이용자 인식 개선 -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교수·학습 활성화 - 학교도서관 인프라 내실화 및 운영체제 강화 - 도서관 인적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 진흥 체제 정립 - 학교도서관 지원 강화 - 학교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 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	-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확대 -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지원 내실화 - 꿈과 끼를 찾는 독서동아리 운영 -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 학교도서관 중심의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과 연계 중심의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 -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대 -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 확보와 전문화 - 학교도서관 지원체제 강화 - 학교도서관 지원 시스템 개선 - 학교도서관 진흥 재원 확대 및 다양화	-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활동 강화 -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지원 확대 -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미래 인재 역량 배양 -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 -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지원 - 학교도서관 장서의 교육과정 적합성 강화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자율적 연구활동 지원 -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수업방법 혁신 지원 -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주도 독서활동 확대 - 제도 정비 및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정책 거버넌스 강화 -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마련 -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부, 2014; 2019; 2024; 교육인적자원부, 2002

Ⅲ.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의 내용 분석

1.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영역에서는 시설, 공간, 장서와 관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을 논의하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학교도서관의 기본시

설과 장서를 확충하여 전국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계획 추진 이후 학교도서관 설치율과 공간 규모, 학생 1인당 장서량,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빈도가 증가하였다(노영희, 홍강표, 2007).

제1차 기본계획은 기반 확충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자료의 질과 교육적 활용을 함께 강조하였다. ‘학교도서관 인프라의 내실화 및 운영체제 강화’를 통해 기존 시설과 장서의 확충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서의 질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시설과 장서 정책이 양적 확충에 머무르지 않고, 자료의 질적 관리와 교육적 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시설과 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정책이 구체화되었다. 우선,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학교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토론·협력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 정보원과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국가 수준의 표준 장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장서의 최신성과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설과 장서를 단순히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반이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에서 함께 다루었던 자료와 공간 정책이 각각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구체화하였다.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 장서의 교육과정 적합성 강화’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 장서 구축과 기관 간 장서 공유를 통해 교육과정 연계성과 활용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학생의 배움, 교원의 수업 연구, 학부모의 소통을 지원하는 정보 공유 공간이자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이 창작·토론·협력이 가능한 공간의 형태를 제시하였다면, 제3차 기본계획은 이를 발전시켜 해당 공간이 학교 교육에서 수행해야 할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에서 제시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 정책을 계승하면서 이를 디지털 기반으로 더 확대하였다. 자료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전자책 구독 서비스(e-북드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독서로 시스템 및 유관 기관의 원문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학교가 소장한 장서뿐 아니라 외부 디지털 정보 자원의 교육적 활용을 지원하였다. 공간 측면에서는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 정책을 통해 미래형 플랫폼 개념을 이용자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체화하고, 다중문해력 교육, 메이커 활동, 디지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이동식 서가 및 특별실 활용 등을 통해 학교도서관 공간을 학교 전체의 학습 환경으로 확장하였다.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정책은 초기에 시설과 장서의 양적 확충을 통한 물리적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후 자료의 질적 관리와 교육과정 적합성,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의 기능이 점차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개별 학교의 소장 자료를 넘어 외부 디지털 정보 자원에 대한 접근과 연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기능을 학교 전체의 학습 환경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가 단순한 운영 기반을 넘어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 인프라로 재구성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과 관련해 세부 실행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최소 세 개 이상의 계획에 명시된 내용은 시설 개선과 공간 재구성, 장서 확충과 자료의 다양화, 학교기본 운영비 중 자료구입비 3% 확보, 장서 폐기·제적을 통한 최신성 유지 등이다.

<표 3>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관련 계획별 변화 내용

공통 정책 내용	명시된 계획	계획에 따른 변화
시설 개선과 공간 재구성	5개 계획	(종합방안) 설치·리모델링 → (1차) 교수·학습 중심 공간 → (2차) 문화·예술·소통·나눔 공간 → (3차) 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습플랫폼 → (4차) 이용자 친화적 복합 공간
장서 확충과 자료의 다양화	5개 계획	(종합방안) 학생 1인당 장서수를 5.5권에서 10권 이상으로 확대 → (1차) 학생 1인당 장서수를 11권에서 15권 이상으로 확대, 전자정보원·멀티미디어 형태 등 자료의 다양화 → (2차) 학생 1인당 장서수를 20권에서 25권 이상으로 확대, 장서의 최신성·질 관리 → (3차) 교육과정 적합성과 기관 간 공유 → (4차) 온·오프라인 수업자료 및 다양한 매체
자료구입비 3% 기준	5개 계획	(종합방안)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1차) 권고 → (2차) 권고 → (3차) 필수 편성 → (4차) 필수 편성
장서 폐기·제적을 통한 최신성 유지	제1~3차	(1차) 전체 장서의 7% 폐기 → (2차) 연 1회 이상 폐기 → (3차) 장서 점검 및 연 1회 이상 주기적 폐기

2.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영역은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정책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역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학교도서관 활용수업과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즉,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독서교육과 교수·학습의 중심 공간이자 지역사회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활성화 종합방안의 교육프로그램을 계승하여 ‘이용자 확대 및 이용자 인식 개선’,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교수·학습 활성화’, ‘학교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확대 및 구체화하여 추진하였다. 이용교육·정보활용교육·독서교육을 구체화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및 교과교사의 수업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확대’와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지원 내실화’를 통해 교과수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 연계 중심의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지속하였다. 이와 함께 ‘꿈과 끼를 찾는 독서동아리 운영’,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중심의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며, 독서교육을 동아리 활동, 진로교육, 문화예술 체험활동과 연계하였다. 이는 학생 참여와 경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다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의 교수·학습 지원과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승하여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활동 강화’,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지원’,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미래 인재 역량 배양’,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 기존의 교과 연계와 정보활용교육은 프로젝트·협력수업으로 확대되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윤리, 민주시민교육, 메이커교육 등이 신설되었다. 이는 제2차에서 다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미래사회 역량 중심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의 교수·학습 지원과 미래사회 역량 중심 프로그램을 계승하면서 이를 디지털 전환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와 ‘수업방법 혁신 지원’에서는 체감형 수업지원 서비스, 에듀테크 및 탐구 중심 수업모형, 학교도서관 수업 네트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개별 수업 자료의 제공에서 수업의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복합양식 읽기와 주제 통합적 읽기, 책임 교육학년과 느린학습자, 늘봄학교 및 학교급 전환기 학생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나아가 학생의 수준과 발달단계, 학습 특성 및 주도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 정책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을 통해 사제동행 독서와 가정 연계 독서를 확대함으로써 독서교육의 참여 범위를 교육공동체로 확장하였다.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정책은 학교도서관 활용교육과 독서교육의 기반 마련에서 출발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지원의 체계화와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거쳐 미래사회 역량 및 디지털 기반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학교도서관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의 핵심 기반으로 그 역할이 점차 고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와 관련해 세부 실행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최소 세 개 이상의 계획에 명시된 내용은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및 협력수업, 학교교육계획에 학교도서관 활용·독서교육 반영이 있다.

〈표 4〉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관련 계획별 변화 내용

공동 정책 내용	명시된 계획	계획에 따른 변화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및 협력수업	5개 계획	(종합방안)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 (1차)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교수·학습 활성화 → (2, 3차)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확대 및 강화(교과융합·연계) → (4차)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 내실화(수업 자료 개발 및 통합 활용 지원)
학교교육계획에 학교도서관 활용·독서교육 반영	5개 계획	(종합방안)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학교도서관 활용 부분 반영 → (1, 2차) 학교도서관 이용교육(독서교육)을 연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3, 4차) 학교도서관 활용교육을 연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3.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 주체의 역할에 적합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라는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담당교사와 자원봉사자, 장학 및 관리직 등을 대상으로 역할에 맞는 연수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지원단과 교육청 사업단, 순회사서제 등을 운영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담인력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운영 주체의 역량을 높여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성격을 가진다.

제1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수와 외부 지원 방식을 유지하면서 ‘도서관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해 전담인력 확보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새로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정원과 배치기준에 따라 사서교사 등의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사서 교직원의 역할도 운영 보조에서 이용교육, 정보활용교육, 다양한 매체 활용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담당하는 교수·학습자료 전문가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인력 정책은 보조적 운영인력의 활용에서 법적 기준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로, 전문성 정책은 전담인력의 교육적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 확보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을 함께 강조하였다. 국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역할을 구분한 연수체계를 마련하고, 교원양성기관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심화·전문연수를 확대하였다. 이는 제1차 계획에서 제시된 전담인력의 확보와 역할을 바탕으로, 전문성 개발의 대상과 수준, 지원주체를 체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교도서관 설치 학교에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 인력 확충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독서 및 인문소양교육과 함께 정보활용교육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자율적 연구 활동 지원'을 신설하여 전국 및 시·도 단위의 협의체 운영과 자율적 연구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담인력 확보와 연수 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연구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지원으로 정책이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의 전담인력 확대와 자율적 전문성 개발 정책을 계승하면서 이를 교수·학습 지원 역량 중심으로 고도화하였다.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에서는 사서교사 정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와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함께 고려한 배치모형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서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인력의 수요와 직종·학교급·경력 등을 고려한 모듈형 연수과정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에서는 학교도서관 수업 네트워크, 교원 자율학습공동체, 독서교육연구회 및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학교 안팎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는 제3차의 협의체와 자율연구 중심의 전문성 개발을 학교도서관 활용·협력수업과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수업 전문성으로 연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정책은 단순히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서 벗어나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할 교육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전문성 개발 역시 대상별 연수와 심화 연수에서 협의체, 자율적 연구 활동, 수업 네트워크와 맞춤형 연수로 확대되었다. 즉, 전담인력의 배치가 제도화되고 확대될수록 그 역할은 도서관 운영 담당자에서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교육 전문가로 재구성되었으며, 전문성 개발도 개인의 역량 향상을 넘어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수업 전문성 개발 체계로 전환되었다.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 세부 실행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최소 세 개 이상의 계획에 명시된 내용은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가 있다.

<표 5>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관련 계획별 변화 내용

공통 정책 내용	명시된 계획	계획에 따른 변화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	5개 계획	(종합방안) 다양한 전담인력 확보와 연수 실시 → (1차) 법정기준에 따른 인력 확보와 전문교육 실시 → (2차) 사서교사 확보 우선 추진과 심화·전문 연수 → (3차)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 확대와 사서교사 대상 교육부 주최 연수 신설, 학교도서관 담당교원과 사서 대상 교육청 연수 필수 개설 → (4차) 사서교사 정원 확대 및 배치 모형 개발, 양성 교육과정 개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 운영

4.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은 학교도서관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추진조직, 협력체계 및 정책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영역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학교

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학부모와 시민단체, 주민자치조직, 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력·시설·장서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교도서관 지원을 학교 내부의 운영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원체제로 확대하려는 정책적 시도였다. 다만 지원체제 차원에서 국가·교육청·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제도화된 단계로 보기는 어려웠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 기반을 법·제도에 근거한 공식적인 추진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전 하나의 정책이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되었다. '학교도서관 진흥체제 정립'을 통해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교육청-학교를 잇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학교도서관 지원 강화'에서는 중앙 컨설팅팀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을 통해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과의 협력망,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학교도서관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구축하였다. 활성화 종합방안이 지역사회 참여와 민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제1차 기본계획은 이를 법적 추진체제와 전문 지원조직, 도서관 협력망으로 구체화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에서 구축한 제도적 틀을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운영 기반으로 확장하였다. 이때 이전의 세 가지 정책이 '학교도서관 지원체제 강화'로 통합되며 위원회의 기능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 시스템 개선' 과제를 통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학교도서관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원, 통계관리 및 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학교도서관 지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학교도서관 진흥 재원 확대 및 다양화' 또한 신설하여 국비와 지방비의 역할 분담 및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을 안정화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에서 마련된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실제 운영과 정책 관리가 실현 가능한 지원 체계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기반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한 단계라 볼 수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에서 구축한 학교도서관 지원체계를 계승하면서 정책 기반을 강화하였다.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존의 위원회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계부처 협업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학교도서관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지원'을 신설하여 차세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정보시스템(DLS) 개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연계 등을 통해 정보공유체계를 고도화하였다. 이는 제2차의 운영지원 중심의 체계에서 나아가 연구와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정책관리 체계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에서 구축한 거버넌스와 정보시스템 기반을 계승하면서 학교도서관 지원 체계를 제도, 거버넌스,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 체계로 발전시켰다. 제3차의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에서 제시한 연구과제를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구체화하여 실제 정책과제로 구현하였다. 또한 '정책 거버넌스 강화'에서는 제3차의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계승하여 중앙·지역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거점 학교도서관 운영을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 단위 협력과 지원체계를 더욱 조직화하였다.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마련'은 제3차의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지원'을 확대 및 구체화한 과제로, 독서로를 중심으로 표준 데이터셋 개발, 데이터 통합 관리, API 연계, 교과서 수록도서 DB와 사립책 DB 구축 등을 추진하여 학교도서관 정책과 독서교육을 데이터 기반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과제에서 정책 홍보 및 관심도 제고를 통해 학교도서관 이용과 학생 독서동향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논의와 전국 단위 학교도서관 대회를 추진하여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사회적으로 공유·확산하고자 하였다. 이어 '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신설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성과평가 모형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과관리와 데이터 활용의 결과를 정책 홍보와 사회적 관심으로 연결하여 학교도서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에서 출발하여 정책 운영과 평가, 데이터 활용 및 협력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해 세부 실행 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최소 세 개 이상의 계획에 명시된 내용은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 고도화, 지원센터 및 도서관 협력체계, 지역사회·공공도서관과의 연계, 평가·조사·성과관리가 있다.

<표 6>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관련 계획별 변화 내용

공동 정책 내용	명시된 계획	계획에 따른 변화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 고도화	종합방안, 제2~4차	(종합방안) 도서관리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 (2차)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 → (3차) 차세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4차) 디지털 기반 독서활동 지원 시스템(독서로) 운영, 학교생활기록부와 독서로 시스템 연계 추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제1~4차	(1차)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 구축과 협력체제 구축 → (2, 3차) 시·도교육청-공공도서관 연계 지원센터 운영 → (4차)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역사회·공공도서관과의 연계	5개 계획	(종합방안) 학부모-지역사회 협력 통한 학교도서관 운동 전개, 공공도서관과 인력/프로그램/순회문고 연계 → (1차)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과 협력망 구축 강화 → (2차) 공공도서관-문화센터와의 협력망 구축 강화 → (3차) 공공도서관,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진로 체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 (4차) 공공도서관과 함께 지역 실무협의체 등 구성 및 디지털 창작 프로그램 운영
평가·조사·성과관리	5개 계획	(종합방안)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노력을 중점 평가요소로 반영 → (1차) 학교도서관 평가시스템 운영, 이용자 요구 및 도서관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분석 → (2차) 이용자 실태 조사 강화, 시·도교육청별 학교도서관 다양한 평가지표 개발 권장 → (3차) 학교도서관 성과 점검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조사 실시 → (4차) 학교도서관 성과관리 체계 마련

IV.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간 연계 및 법정 사항 반영 양상 분석

1.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간 연계 양상 분석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부터 제4차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간 연계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하나의 추진 과제에 둘 이상의 정책적 성격이 포함된 경우에는 세부 추진 내용을 기준으로 복수 영역에 연결하였다. 기본계획 간 연계 양상을 분석한 결과, 네 정책 영역은 핵심 정책을 지속하면서 정책 대상과 수단을 확대 및 구체화하거나 여러 과제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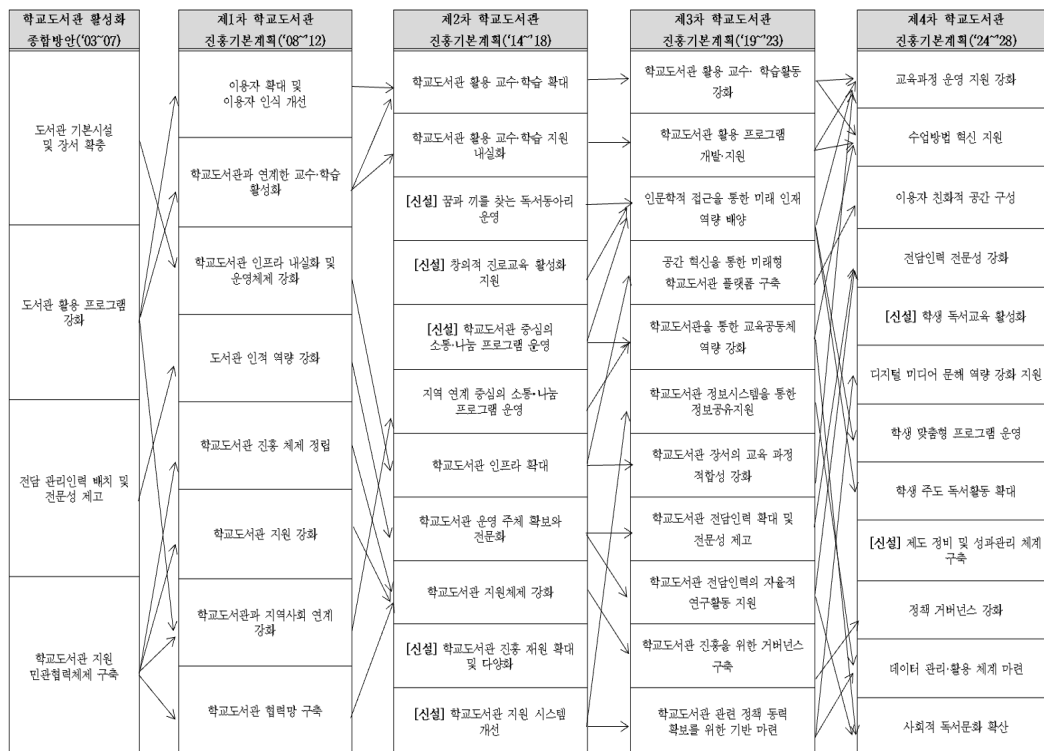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영역에서는 시설과 장서에 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은 제1차의 '학교도서관 인프라 내실화 및 운영체제 강화'와 제2차의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대'로 이어졌다. 제2차의 단일 과제는 제3차에서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과 '학교도서관 장서의 교육과정 적합성 강화'로 분화되어 시설과 자료 정책이 확대 및 구체화 되었다. 제3차의 공간 관련 과제는 제4차의 '이용자 친화적 공간 구성'으로 계승되었으며, 장서 관련 과제는 교수·학습 영역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독립적인 신설 또는 중단 과제보다 기존 인프라 정책이 공간과 장서로 분화되고, 다시 교육과정 지원과 결합되는 변화가 두드러졌다.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가 제1차의 '이용자 확대 및 이용자 인식 개선',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교수·학습 활성화', '학교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확대 및 구체화 되었다. 제2차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확대'와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지원 내실화', '지역 연계 중심의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이 계승되는 한편, '꿈과 끼를 찾는 독서동아리 운영', '창의적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 중심의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신설되면서 교수·학습 관련 과제가 여섯 개로 확대되었다. 제3차에서는 제2차의 지역 연계 및 교수·학습 관련 과제가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활동 강화',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지원',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로 계승되었다. 독서동아리와 진로교육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미래 인재 역량 배양'으로 통합되었다. 제4차에서는 이러한 네 과제가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수업방법 혁신 지원',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 확대',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으로 확대 및 구체화 되었다.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가 제1차의 '도서관 인적 역량 강화'와 제2차의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 확보와 전문화'로 계승되었다. 제3차에서는 이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자율적 연구활동 지원'으로 확대 및 구체화 되었다. 제4차에서는 제3차의 두 과제가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로 통합되었다.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영역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이 제1차의 '학교도서관 진흥체제 정립', '학교도서관 지원 강화', '학교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으로 확대 및 구체화 되었다. 제1차의 세 과제는 제2차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체제 강화'로 통합되었으며, '학교도서관 지원 시스템 개선'과 '학교도서관 진흥 재원 확대 및 다양화'가 신설되었다. 제3차에서는 '학교도서관 지원체제 강화'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계승되었고, '학교도서관 지원 시스템 개선'은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과 '학교도서관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지원'으로 확대 및 구체화 되었다. 제4차에서는 이들 과제가 각각 '정책 거버넌스 강화',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마련',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으로 계승되었으며, '제도 정비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신설되었다. 반면 제2차의 '학교도서관 진흥 재원 확대 및 다양화'는 제3차 이후 대응하는 독립 과제가 확인되지 않아 중단 과제로 분류하였다.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부, 2014; 2019; 2024; 교육인적자원부, 2002를 종합하여 구조화함.

〈그림 1〉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세부 추진 과제 간 연계 구조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간 연계 양상을 종합하면, 정책은 시설·장서 등의 기본 인프라 구축에서 교육과정 연계, 공간 혁신, 정보·미디어 문해교육,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데이터 기반 정책 관리로 발전하였다. 한편, 전담인력 확보,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강화, 자료구입비 기준, 성과 관리 등은 여러 계획에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정책의 연속성과 함께 후속 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2.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 법정 사항 반영 양상 분석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 기본계획이 아니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차부터 제4차까지 수립된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 42개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정 사항의 반영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인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은 기본계획 전체의 성격과 방향을 포괄하는 항목이므로 분석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고, 각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를 해당 법정 사항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때 제3호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연구’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조항을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평가·개선을 위한 조사·분석과 연구 기반 조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추진 과제의 분류는 과제명뿐만 아니라 세부 추진 내용과 정책의 주된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하나의 추진 과제가 둘 이상의 법정 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 과제의 주된 목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하나의 항목에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제4차 계획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는 자료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2호와 관련될 수 있으나, 과제의 주된 목적이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있으므로 제5호로 분류하였다. 제1차부터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세부 추진 과제의 법정 사항 반영 양상은 <표 7>과 같다.

<표 7>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세부 추진 과제의 법정 사항 반영 양상

세부 추진 과제		법률의 호	2호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호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연구	4호 사서교사·실기교사· 사서의 확보·양성· 교육	5호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차 기본 계획 (8개)	이용자 확대 및 이용자 인식 개선					○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교수·학습 활성화					○
	학교도서관 인프라 내실화 및 운영 체제 강화		○			
	도서관 인적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 진흥 체제 정립					○
	학교도서관 지원 강화					○
	학교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					○
	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7권 제3호)

세부 추진 과제		법률의 호	2호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자료의 확충과 정비	3호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연구	4호 사서교사·실기교사· 사서의 확보·양성· 교육	5호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차 기본 계획 (11개)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확대					○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지원 내실화					○
	꿈과 끼를 찾는 독서 동아리 운영					○
	창의적 진로 교육 활성화 지원					○
	학교도서관 중심의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연계 중심의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					○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대	○				
	학교도서관 운영 주체 확보와 전문화				○	
	학교도서관 지원 체제 강화					○
	학교도서관 지원 시스템 개선					○
	학교도서관 진흥 재원 확대 및 다양화					○
제3차 기본 계획 (11개)	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활동 강화					○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개발·지원 확대					○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미래 인재 역량 배양					○
	공간혁신을 통한 미래형 학교도서관 플랫폼 구축	○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지원					○
	학교도서관 장서의 교육과정 적합성 강화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				○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자율적 연구 활동 지원				○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제4차 기본 계획 (12개)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수업방법 혁신 지원					○
	이용자 친화적 공간 조성	○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	
	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
	디지털 미디어 문해 역량 강화 지원					○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주도 독서활동 지원 확대					○
	제도 정비 및 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정책 거버넌스 강화					○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마련			○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
42개	합계		5	3	5	29

〈표 7〉과 같이 전체 42개 세부 추진 과제 가운데 제2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5개, 제3호는 3개, 제4호는 5개, 제5호는 29개였다. 제2호로 분류된 과제는 제1차와 제2차 기본계획에서 양적 확충 정책을, 제3차에서 공간의 교육적 기능과 장서의 질 관리로 세분화하였다가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미래 역량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었다.

제3호로 분류된 과제는 제3차 기본계획에 처음 반영되어 미래 학교도서관 모형과 차세대 독서 교육융합지원시스템 개발 연구, 학교도서관 현황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산출물로 명시하였고, 제4차 기본계획에서 법 개정 방안 연구와 조사모형·측정도구 개발, 정보조사와 데이터 분석과 같이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연구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4호에 반영된 과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전담인력의 확보와 역할별 연수를, 제2차 기본계획에서 사서교사 우선 확보와 국가·교육청·학교 단위 연수체계를 제시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담인력 확대 및 전문성 제고와 자율적 연구 활동 지원과 같이 2개 과제로 분리함으로써 배치정책과 전문성 개발 정책을 강화하였고,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과제에 사서교사 배치모형, 양성과정 기본이수과목 개정 및 직종·학교급·경력별 연수를 구체화하였다.

제5호에는 교수·학습과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진로·인문·미디어 문해 프로그램, 이용자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지원센터와 협력망, 재정, 정보시스템, 거버넌스, 성과관리, 데이터 기반 및 사회적 독서문화 등 많은 과제가 이 조항에 분류되었다.

제2호와 제4호는 모든 기본계획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으나 추진 과제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제3호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처음 나타난 이후 제4차 기본계획에서 더 많이 반영되었다. 반면 제5호는 모든 기본계획에서 가장 많은 추진 과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 가지고는 기본계획이 법정 사항을 불균형하게 반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5호는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용자교육·독서교육·정보 활용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등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뿐 아니라 지원체계와 정책 기반도 독립된 법정 항목이 없어 대부분 제5호에 분류되었다. 이는 법령과 기본계획 간 학교도서관의 실질적 역할과 이를 통한 교육적 영향력 간 괴리를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부터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까지 약 25년에 걸친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정책의 내용을 네 영역으로 범주화해 계획 간 연계성을 분석하고, 제1차부터 제4차까지

42개 과제에 나타난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 제7조 제2항의 반영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 학교도서관 정책의 중심은 물리적 기반 조성에서 교육적 활용과 질 관리로 이동하였다. 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정책은 설치와 장서 확충에서 교육과정 적합성, 학습공간 혁신, 온·오프라인 자료와 데이터의 연계로 발전하였다.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정책은 이용과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교육과정 연계 수업, 진로·문화·공동체 활동, 정보·미디어 문해와 미래 역량,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정책은 다양한 보조 인력 활용에서 법정 전담인력, 체계적 연수, 자율 연구와 수업 전문성 강화로 고도화되었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정책은 민관협력에서 법정 추진체제, 정보시스템, 거버넌스, 성과 평가와 데이터 기반 관리로 발전하였다.

둘째, 다섯 개의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은 시설·장서,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전담인력·전문성, 지원체제라는 핵심 영역을 공유하여 높은 정책적 연속성을 보였다. 그 연속성은 계승, 확대 및 구체화, 중단, 통합, 신설을 통해 형성되었다. 특히 제4차 계획은 제3차의 미래교육 플랫폼, 미디어 문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거버넌스와 정보시스템을 계승하면서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을 통합하고 성과·데이터 중심의 정책 관리로 재구성하였다. 한편 전담인력 확보,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강화, 자료구입비 기준, 성과관리는 여러 계획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해당 과제의 정책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후속 계획에서 이행 수준과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법정 필수사항 분석 결과 42개 세부 추진 과제 가운데 제2호 시설·자료는 5개, 제3호 연구는 3개, 제4호 전담인력은 5개, 제5호 포괄 조항은 29개(69%)로 나타났다. 제2호와 제4호는 모든 계획에 반영되었고, 제3호는 제3차에 처음 나타난 뒤 제4차에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도서관 정책의 중심으로 성장한 교수·학습 지원, 독서교육, 정보·미디어 문해교육, 디지털 서비스, 지원체제와 성과관리는 독립된 법정 항목이 없어 대부분 제5호에 분류되었다. 이는 제5호의 포괄성이 커서 교수·학습과 지원체제가 법정 항목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보여준다.

2. 제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법·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 제7조 제2항의 필수 포함사항을 학교도서관의 현재 기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 기본계획은 국가 수준의 학교도서관의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현행 조항은 시설·자료, 연구와 전담인력을 명시하지만 교육과정 및 학습성과, 독서·정보·미디어 문해교육, 디지털 서비스, 지원체제·재정과 평가·환류는 제5호

포괄 조항에 의존한다. 이러한 과제는 여러 차수의 기본계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 학교도서관 정책에서 주요 기능으로 요구되는 기능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2호와 제4호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교수·학습 및 독서·문해교육’, ‘지원체계와 재정’, ‘성과평가·데이터·환류’를 독립 항목으로 보완하고, 제3호 연구의 범위도 정책개발·조사·평가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계획과 실행 전략 마련에 필요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시·도 시행계획 간 수립 절차와 시간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계획 수립 이후 운영 주체별 특색에 맞는 실행 계획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 같은 해에 수립되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방향과 과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구체화하기 어렵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평가와 확정,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시·도 시행계획과 예산편성을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최소한의 검토 기간과 관계기관·교육청·학교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령이나 수립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계획에 선행 과제의 완료·계속·재설계·종료 여부와 그 근거를 명시하여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정책 학습과 환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반복되는 과제의 미완결 원인과 집행 조건을 진단하지 않은 채 다음 계획에서 명칭만 바꾸면 정책의 지속성과 단순 반복을 구분하기 어렵다. 각 계획의 종료 전에 독립적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 계획에서 선행 과제별로 완료·계속·재설계·종료의 판단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제4차 계획이 제시한 성과평가 모형과 데이터 체계도 단순 실적 집계기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경험, 학교 간 격차, 전담인력의 교육활동, 자료·공간의 실제 활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5차 계획에서는 전담인력과 지원체계의 실행 책무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담인력의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법정 배치기준의 연차별 달성경로, 학교급·지역별 격차, 직종 간 역할, 사서교사의 수업·협력수업과 연수·연구활동 여건을 측정가능한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장학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권한·인력·재원, 취약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데이터의 책임 있는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 주체·예산·성과 지표와 연결함으로써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가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구성해 왔는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정책 발전과 법정계획 구조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 간 연계 유형과 법정사항의 주된 목적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제4차 계획의 평가와 제5차 계획 수립 및 법 개정 논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중앙정부의 계획문서 분석에 한정되어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예산, 학교 현장의 실제 집행과 성과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하나의 과제를 주된 법정 항목에 배정하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도별 시행계획과 예산 비교, 정책담당자·사서교사·교원·학생 면담과 조사, 제4차 계획의 중간·종료 성과평가 및 국가 간 계획체계 비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박철완, 장윤금 (2006).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효과에 대한 분석: 2003~2005년도 사업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143-160.
- 교육과학기술부 (2008).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08~2012).
- 교육부 (2014). 제2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4~2018).
- 교육부 (2019).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
- 교육부 (2024). 제4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24~2028).
- 교육인적자원부 (2002).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 노영희 (2007).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8(1), 117-146. <https://doi.org/10.14699/kbiblia.2007.18.1.117>
- 노영희, 권재현 (2007).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인식 및 효과성 측정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81-110. <https://doi.org/10.4275/KSLIS.2007.41.2.081>
- 노영희, 홍강표 (2007).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 분석 및 평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243-271. <https://doi.org/10.4275/KSLIS.2007.41.1.243>
- 변우열 (2004).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3), 139-173.
- 송기호, 강봉숙, 고재민, 김혜진, 노지윤, 소병문 (2023).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교육부.
- 이재원, 조현양 (2006). 학교도서관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97-126.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43호.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yun, Woo-Yeol (2004).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3), 139-173.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33343.

- Kwak, Chul Wan & Chang, Yunkeum (2006).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143-160.
- Lee, Jae-Won & Cho, Hyun-Yang (2006).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chool library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2), 97-126.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Master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 (2008-2012)*.
- Ministry of Education (2014). *The Second Master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 (2014-2018)*.
- Ministry of Education (2019). *The Third Master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 (2019-2023)*.
- Ministry of Education (2024). *The Fourth Master Plan for School Library Promotion (2024-2028)*.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2). *Creating Good School Libraries: Comprehensive Plan for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 Noh, Younghee (2007).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the prospect of library rehabilit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8(1), 117-146. <https://doi.org/10.14699/kbiblia.2007.18.1.117>
- Noh, Younghee & Kwon, Jae-Hyun (2007). An evaluation study on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2), 81-110. <https://doi.org/10.4275/KSLIS.2007.41.2.081>
- Noh, Young-Hee & Hong, Kang-Pyo (2007). An evaluation study on the school library revitaliz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243-271. <https://doi.org/10.4275/KSLIS.2007.41.1.243>
- Song, Gi-ho, Kang, Bong-sook, Ko, Jae-min, Kim, Hye-jin, Noh, Ji-yoon, & So, Byeong-moon (2023). *Research on School Reading Education and School Library Development Plans for Future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Act No. 18547.

